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제정 2022.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라 칭한다.(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2조(설립 근거와 목적) 이 법인은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26-1, 2층(수정동)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전 및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재단은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시장관리와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11. 청년몰 운영·관리·활성화 등 관련 사업
1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대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이사회 의결로써 수행하기로 정한 사업

②재단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 경상남도 또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탁 및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재단은 시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기타 지역경제와 상권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구성) ①본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과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2. 감사 1인

②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소관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시장
2. 시의 업무담당과장

3.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담당과장 또는 팀장(이후에는 협의 조정하여 선임한다.)
- 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 외의 자(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공공기관·단체, 민간 및 시장상인단체 등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 선임한다.
- ⑤ 감사 1인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①임기 만료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나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재단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3.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과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임기가 종료된 때 또는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 1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선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임원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선출한 날(취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0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이행을 확인하거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이사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업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무국장은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감사) ①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감사가 없을 경우에는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선임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 요구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②감사는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 및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국

제14조(사무국) 재단에는 재단의 사무를 관장할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재단의 사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국장의 역할) 사무국장은 법령, 정관 기타 재단의 제 규정과 이사회에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상권활성화사업 기간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타운매니저를 겸직하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16조(사무국장의 임명) ①사무국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임기만료 시에도 후임 사무국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임 사무국장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사무국장이 궐위된 때 이사회는 후임 사무국장을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단, 후임 사무국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장이 직접 제15조에 따른 사무국장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또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사무국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④사무국장은 타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학강의, 심사, 평가 등 이사회에 승인을 득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사무국 직원) ①사무국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 직원은 4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④사무국 직원은 타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사무국장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9조(사무국장의 해임) ①사무국장은 제15조를 위반할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7일 이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고의나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업대상지와 연관된 기관 또는 대상인(상인 등)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재단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3.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사무국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20조(사무국장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동 정관 제7조 사항에 적용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이 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국장 및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과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 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 및 재단의 해산에 관해서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권의 제한) ①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정관 및 직제·정원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 실적, 예산·결산 등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잉여금 처분, 손실금 보전 및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그 밖에 법률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26조(회의록) ①이사회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명과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②이사회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단의 직원 중에서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및 기구

제28조(기구) ①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9조(직원) ①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재단의 직원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및 복무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재단의 조직이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단 구성) ①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 및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목적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에게는 그 역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협의회 구성

제3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 상권활성화 담당부서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도시·건축·디자인·경영·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상권 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상권활성화지원 담당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제4조 사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간사 등)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재단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 목록은“별표 1”과 같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에 방법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따른다.

제39조(운영재원의 조달) ①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위탁·대행사업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재단은 자생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수익사업 및 위·수탁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

제4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1조(회계의 원칙) ①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재단의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43조(회계년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4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실적과 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7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인 지방청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승계) ①「전통시장법」 및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시상권관리기구인 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은 재단이 설립등기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재단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②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은 기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이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재단이 승계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에 따르며, 다만, 잔여재산 중 국가에서 출연한 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당초 지원목적과 동일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제51조(준용법령)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시의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52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방청장에게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연도의 회계연도)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재단의 최초 사무국장은 제16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임시상권관리기구인 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의 타운매니저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진주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 사업기간 동안 수행한다. 단, 상권활성화를 위한 추가사업이 추진될 시 이사장이 사업기간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재단의 최초 사무국 직원은 제17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임시상권관리기구인 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의 직원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진주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 사업기간 동안 수행한다. 단, 상권활성화를 위한 추가사업이 추진될 시 이사장이 사업기간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재단의 최초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제6조, 제12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임원 선정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

제4조(설립당시의 임원) 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 2”과 같다.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표 3”과 같이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

[별표 1]

재산목록						
총 계	금 10,000,000원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m ²)	평가액 (원)	출연자	비고
		건 물	해당없음			
		대 지	해당없음			
		출연금		10,000,000	진주시	
		소 계		10,000,000		

[별표 2]

재단법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시 임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이사장	조규일	현) 진주시장	당연직
이 사	정유근	현) 진주시 도시재생과장	당연직
이 사	성기현	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당연직
이 사	조미숙	현) 진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임직
이 사	정의도	현) 진주금곡농협 조합장	선임직
이 사	김용기	전) 진주시 평생학습소장	선임직
이 사	이재달	현) 한국국제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선임직
이 사	정대용	전) 진주청과상점가 회장	선임직
이 사	김성남	현) 진주시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선임직
이 사	최대수	현) 전국 청년상인네트워크 대표	선임직
감 사	성무걸	현) 공인회계사 성무걸사무소 대표	선임직